【검토보고서】

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□ 제 출 자: 대 구 광 역 시 장

□ 제출일자: 2021년 9월 24일

□ 회부일자: 2021년 9월 29일

2. 제안이유

□ 전(全) 세대 모든 고용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, 중장년 직업능력개발 교육·훈련, 장기근속지원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「대구광역시 청년 취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」를 개정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□ 조례 제명 변경

□ 중장년 일자리 지원 확대(안 제10조)

4. 검토의견

□ 적법성 여부

○「고용정책 기본법」제6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,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조 제1항에서는 광역시장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·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,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청년 취업 지원에서 전(全) 세대로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,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□ 주요 검토사항

○ **조례 제명 변경**은 청년 취업 지원에 한정된 것을 전(全) 세대 모든 고용계층을 아우르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「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」에서「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」로 변경하려는 것임.

○ **안 제10조(중장년 일자리 지원)**는 중장년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및 장기근속 지원과 사기진작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□ 검토결과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 취업 지원에서 전(全) 세대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, 특히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령자(55세 이상인 사람) 및 준고령자(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)를 포함하는 중장년층[3]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교육과 훈련, 장기근속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○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실직과 조기퇴직 등 우리 사회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장년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,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자들이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 2막을 열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취업·창업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○ 이상으로 **검토 보고**를 마치겠습니다.

3)「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」제2조(정의)
4. “중장년”이란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